

제 10 장 분쟁해결

제10.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중재패널이란 제10.7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중재인이란 제10.7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후보자란 제 10.9 조에 따라 제 3 의 중재인으로 임명되는 것이 고려되는 개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10.7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란 제10.3조에 언급된 대로 이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른 중재패널 절차를 말한다.

제10.2조 목적

1. 이 장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이 장에 따라 제기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 10.3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나. 한쪽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1)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또는

2)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

제 10.4 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 1 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거나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하였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가 절차적 또는 관할적인 이유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 10.5 조

협의를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 10.3 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고,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3. 협의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응답한다.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선의로 협의를 개시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4.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양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5. 협이가 개시되면 양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한다.
6. 이 조항에 따른 협의는 비밀이며 이 협정상의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 10.6 조

주선, 화해 또는 조정

1. 주선, 화해 또는 조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다. 이들은 양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이 장에 규정된 중재패널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선, 화해 또는 조정은 계속될 수 있다.

3. 주선, 화해 또는 조정과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비밀이며, 이 협정상의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 10.7 조

중재패널의 설치

1. 제10.5조에 따라 협의 요청을 한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서면으로 피소 당사국에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가. 피소 당사국이 제 10.5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 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15 일 내에 그러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나. 양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 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30 일 내에 그러한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2.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은 피소 당사국에 서면으로 한다.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요청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 그리고 그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적시한다.

제 10.8 조

중재패널의 위임사항

1. 양 당사국이 중재패널 설치일 후 5일 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제 10.7 조에 따른 중재패널 설치의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사유와 함께 법 및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결정 및 권고를 하는 것”

2. 양 당사국이 그 밖의 위임사항에 합의하는 경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패널에 합의된 위임사항을 통보한다.

제 10.9 조 중재패널의 구성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2. 각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에 관한 요청의 접수일부터 30 일 내에, 자국의 국민일 수 있는 중재인을 한 명씩 임명하고, 중재패널의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 역할을 할 최대 3 명의 후보자를 제안한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에 관한 요청의 접수일부터 45 일 내에, 제안된 후보자를 고려하여, 중재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세 번째 중재인을 합의하여 임명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45 일 내에 세 번째 중재인을 합의하여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7 일 내 회합하여 양 당사국에 의하여 제안된 후보자 명부에서 추첨으로 의장을 선정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세 번째 중재인 후보자는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고, 어느 당사국에도 통상적인 거주지가 없으며,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도 고용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자격으로도 그 분쟁을 다루지 않았어야 한다.

4. 중재패널의 설치일은 세 번째 중재인이 임명되는 날이다.

5. 모든 중재인은 이 협정과 관련된 법, 국제무역 또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상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각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분쟁과 관련된 어느 한쪽 당사국이나 기관과 연계되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부속서 10-나를 준수한다.

6. 한쪽 당사국이 중재인이 부속서 10-나의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합의하에 그 중재인을 제7항에 따라 교체한다.

7.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절차에 참석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제6항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 후임자는 15일 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임명 방식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선정된다. 후임자는 원 중재인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절차에 참석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제6항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날부터 정지된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날 재개된다.

제 10.10 조

중재패널 절차

1. 중재패널은 비공개 회의로 회합한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초청을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에 참석한다.

2. 양 당사국은 적어도 하나의 서면입장을 제출하고, 절차상 발표, 진술 또는 반박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잠정보고서에 대한 의견과 중재패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중재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 또는 서면입장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다고 주장하는 한쪽 당사국은 그러한 불합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예외의 적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4. 중재패널은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과 협의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중재패널은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해석규칙에 따라, 양 당사국이 채택한 해석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 협정을 해석한다.

6.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포함하여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보고서를 포함하여 과반수 투표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7.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에 관련 정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획득한 모든 조언이나 의견의 사본,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8. 중재패널의 심의 및 중재패널에 제출된 문서는 비밀로 취급된다.
9. 제 8 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당사국은 분쟁에 관한 자국의 견해에 대하여 공식 발표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중재패널에 제출한 정보와 서면입장은 비밀로 취급한다. 한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된 정보 또는 서면입장을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비밀이 아닌 정보 또는 서면입장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10. 중재패널의 보고서는 양 당사국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안이 작성된다. 중재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중재패널에 제공된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11. 중재패널의 보고서는 양 당사국의 입장 또는 주장을 요약하는 서술적 부분과 중재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을 모두 포함한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어떠한 권고도 이 협정에 규정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12. 중재패널 절차의 장소는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합의하지 않은 경우, 장소는 양 당사국의 수도가 교대로 되며 중재패널절차의 첫 번째 회의는 피소 당사국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제 10.11 조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1.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그렇게 합의한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자신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지된 중재패널 절차는 재개된다. 그러한 정지의 경우, 중재패널의 업무와 관련된 기간은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중재패널 업무의 정지의 각각의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의 권한은 실효된다. 이 실효는 제소 당사국이 향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2.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가 양 당사국에 제출되기 전 언제든지 중재패널의 의장에게 공동으로 통지함으로써 중재패널 절차를 종료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3. 중재패널은 판정을 내리기 전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양 당사국에 제안할 수 있다.

제 10.12 조

잠정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90 일 내에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모든 조사결과에 대한 기본 근거뿐만 아니라, 다음에 대한 서술적 부분, 조사결과 및 판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권고를 포함하는 잠정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하는지 여부, 또는

나.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는지 여부

2. 중재패널이 잠정보고서의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잠정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한 서면 통보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잠정보고서는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20 일 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은 잠정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5 일 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중재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잠정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제 10.13 조

최종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잠정보고서의 제출일부터 30 일 내에 양 당사국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2. 중재패널이 최종보고서의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한 서면 통보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보고서는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50 일 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3.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중재패널은 제 10.12 조제 1 항 및 제 10.13 조제 1 항에 따른 각 기간의 절반 내에 잠정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제 10.14 조

최종보고서의 이행

1. 최종보고서의 중재패널의 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국을 구속하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중재패널이 최종보고서에서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피소

당사국은 그 불합치를 즉시, 또는 그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거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다. 양 당사국이 중재패널 최종보고서의 제출일부터 45일 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사안을 원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패널은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한다.

4. 피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국이 한 이행 조치를 양 당사국이 합의하거나 제3항에 따라 원 중재패널이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 전에 제소 당사국에 통보한다. 피소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중재패널 최종보고서에서 판정된 대로 불합치를 제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사안을 원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5. 이 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원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을 중재인으로 가진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은 제10.9조에 따라 임명된다. 중재패널은 그 사안이 중재패널에 회부된 날 후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20일 내에,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45일 내에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위에서 언급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최대 30일까지 중재패널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그 보고서는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 10.15 조

불이행, 보상과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1.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이행 조치를 통보하지 못하거나 제소 당사국에 이행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또는 제10.14조제4항에 따라 사안이 회부된 중재패널이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불합치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렇게 요청받는 경우 상호 만족할 만한 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교섭을 개시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언제든지 피소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려고 한다는 서면 통보를 피소 당사국에 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그러한 정지의 통보로부터 30일 후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제1항에 언급된 보상과 제2항에 언급된 정지는 임시적인 조치이다. 보상과 정지 모두 중재패널 보고서에서 판정된 대로 불합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 선호되지 않는다. 정지는 불합치가 완전히 제거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때까지만 적용된다.

4. 제2항에 따라 어떠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할 때,

가. 제소 당사국은 제10.13조에 언급된 중재패널 보고서가 이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그 동일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우선 구해야 할 것이다.

나. 제소 당사국이 동일 분야에 대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그러한 정지에 대한 통보는 그 기초가 되는 근거를 적시한다. 그리고

다. 제2항에 언급된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다.

5. 제소 당사국에 의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위한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 사안을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6. 이 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원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을 중재인으로 가진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은 제10.9조에 따라 임명된다.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은 그

사안이 중재패널에 회부된 날 후 45일 내에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위에서 언급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최대 30일까지 중재패널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그 보고서는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 10.16 조 절차 규칙

1.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부속서 10-가에 규정된 중재절차 규칙의 규율을 받는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과 협의하여, 이 부속서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추가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이 장과 부속서 10-가에 규정된 모든 기간 또는 그 밖의 중재패널 절차 규칙은 양 당사국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또한 언제라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 10.17 조 경비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의 비용과 자국의 경비 및 법률 비용을 부담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 의장의 비용과 절차 수행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는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 10.18 조 부속서

부속서 10-가와 10-나는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